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3

2023.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02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3)

곽동균/신지형/송민선/김호정

2023.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곽동균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신지형 연구위원

송민선 전문연구원

김호정부 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규제비용감축제의 이해	1
제1절 규제비용감축제 개요	1
1. 개념과 관련 기관	1
2. 비용감축제 운영 개요	2
제2절 규제비용·편익 분석 개요	6
1. 비용과 편익의 분류	6
2.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 분석 개요	9
제2장 방송통신 분야 2023년 규제비용분석	11
제1절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11
1. 규제 개요	11
2. 주요 내용	12
3. 관련 법령	15
4. 주요 분석 내용	16
제2절 서비스중단 고지의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8
1. 규제 개요	18
2. 규제 개선 사항	18
3. 규제비용분석	21
제3장 기존 규제비용 분석 종합	26
제1절 2018년 규제비용 분석	26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26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공공아이핀 관련	27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관련	28
4.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9
5.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	30
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31
제2절 2019년 규제비용 분석	32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32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33
3. 공익광고 고시	33
제3절 2020년 규제비용 분석	34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4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35
3.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36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37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등	37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9
7.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39
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40
제4절 2021년 규제비용 분석	41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기준 설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41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관련)	42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2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9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45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46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48
제5절 2022년 규제비용 분석	50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50
2.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51

제6절 규제 성과 분석	53
제4장 결 론	56
참 고 문 헌	59

표 목 차

〈표 1-1〉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	2
〈표 1-2〉 규제비용·편익 검증업무 처리 기한	5
〈표 1-3〉 비용과 편익의 직·간접 범위 개요	8
〈표 2-1〉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12
〈표 2-2〉 방통위 승인 관련 주요 내용	13
〈표 2-3〉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종류 등	17
〈표 2-4〉 신규조문 대조표	19
〈표 2-5〉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규모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현황 ..	23
〈표 3-1〉 2018~2022년도 규제 비용 및 편익 성과	54

그림 목 차

[그림 1-1]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류도 및 유형 구분	7
[그림 1-2] 규제비용감축제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의 일반적인 절차	10

요 약 문

1. 제 목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23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올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2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의무를 행하도록 한 내용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고시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의 경우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가 받은 경우 연결 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규제 완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의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대신, 규제비용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2 중 서비스 중단시 고지의무 대상과 고지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은 고지의무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된 점, 기존의 4시간 이상 장애시 고지의무 불생에서 2시간 이상 장애시로 영역이 확대된 점은 사업자에게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지방식에 SNS 고지를 포함시킨 것은 SNS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규제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기대효과

2023년에는 예년에 비해 규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본격적인 규제비용 분석 수요가 없는 편이었으나, 이전의 연구결과 종합본을 포함함으로써, 그간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적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규제 품질 개선 기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1. Title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3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enacted and revised in 2023. While reviewing the benefits and costs incurred by each amend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such review.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is applied to various regulations revised or enacted in 2022 by KCC related 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4. Research Results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wo regulations such as rule about designation of

identification agency and rule for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business. The first regulation generates direct cost reduction for the agencies while it also generates public benefits. The second regulation increases direct costs of auxiliar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companies, but the size of costs depends on the assumptions applied to the analysi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rough this study, concrete and practical examples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are accumulated, and by presenting measures to reduce regulatory cos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the utiliz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manual is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in the long term, through careful cost analys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6. Expectations

W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while increasing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CONTENTS

Chapter 1.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n Other Countries

Chapter 2.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for Designation of
the Identification Agency Regulations in 2023

Chapter 3.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by Regulatory
Amendments of the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hapter 4. Longitudinal Study of the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es

제 1 장 규제비용감축제의 이해¹⁾

제 1 절 규제비용감축제 개요

1. 개념과 관련 기관

○ 규제비용감축제 개념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규제 비용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감하는 제도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 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2조(국무총리 훈령, '16.7)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one-in, one-out’ 제도 운영을 통해 신규 규제 도입 시 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만큼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며, 2016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one-in, three-out’으로 변경하여 신설 규제 도입 시 3배의 규제 비용 절감을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총량의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 중²⁾

○ 한국형 규제비용관리 관련 기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비용관리의 선결 요건인 규제비용분석 검증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 운영 중임

1) 2017년 배포된 매뉴얼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이었으나, 2023년 배포된 매뉴얼은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로 명칭이 변경됨.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비용감축제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하나, 맥락상 2023년 이전의 지침을 의미할 때는 규제비용관리제로 이해해도 무방함

2) 2023년 배포된 매뉴얼에 따르면(p.19),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감축을 위해 대 상 정부 부처 모두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 하도록 하는 규제비용 200% 감축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

- 이들 기관에서는 규제비용 검증, 규제비용 분석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제도 연구,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등을 수행 중
- 이때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사회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을 지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을 검증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 분야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1-1〉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

구분	중앙행정기관
경제 분야 (13)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사회 분야 (11)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개인정보위, 식약처, 문화재청, 질병청

자료: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2023, p.3)

○ 비용분석위원회

-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제비용 분석과 검증 등 위원회의 전문적 심사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규제연구센터장(당연직)과 민간전문가)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당연직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

2. 비용감축제 운영 개요

□ 적용 대상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로서, 기업과 소상공인 등 피규제자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의 현재가치를 연간비

용으로 환산한 ‘연간균등순비용’ 이 실질 관리 대상

※ 다만, 일부 사항은 규제비용감축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적시에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3항)

〈적용제외 사유〉

-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④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 ⑥ 1년 이하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 유의할 점은 기존 규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규제 신문고 개선사항이나 자체 규제 완화와 같이 부처가 상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해온 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부처의 상시적 규제 완화를 장려
- － 또한 ‘적용’ 으로 판단하더라도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이 불가능할 수 있음 (피규제 대상의 규모나 행위의 정도 등이 불확실하여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량적 비용 추정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운영 절차

- 정부는 더 적극적인 규제 감축을 위해 부처별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국조실) 기존 규제 정비지침 통보 → (각 중앙행정기관)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 부처별 최소 목표율은 소관 규제의 특성, 비용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조실과 각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목표수립의 적극성 평가 반영)

○ 목표 제출 후 이행 관리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를 분리 운영
-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 원칙적으로 신설·강화 규제영향분석 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 동시 발굴, 부득이한 경우 폐지·완화 계획(원칙 1년 이내) 제출

○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 ①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및 규제영향분석 (국무조정실/ 부처)
- ② 규제영향분석서(비용·편익 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 ③ 비용분석위원회 자문
- ④ 자체심사 (부처/ 자체규개위)
- ⑤ 예비심사/본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 ① 폐지·완화 규제 발굴(입안) (부처)
- ② 규제비용분석서 작성·검증의뢰 (부처)
- ③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규제연구센터)
- ④ 비용적용 확정 승인 (국조실)

〈표 1-2〉 규제비용·편익 검증업무 처리 기한

구 분	1차 검증	1차 수정	2차 검증	2차 수정
담당	규제연구센터	소관 부처	규제연구센터	소관 부처
처리 기한 (근무일 기준, 일)	10	10	5	5

자료: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2023, p.21)

□ 규제비용 적립 및 공표

○ 비용의 적립

- －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이후, 폐지·완화한 기존 규제는 규제비용 예비 정산 후 법령 제·개정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규제비용 적립(banking)

○ 규제비용 관리현황 공표

- － 각 부처는 반기별로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 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
- － 단, 규제 신설·강화와 동시에 기존 규제를 정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완화 규제는 당해연도 및 전년도에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고 해당 기간 동안 비용분석 검증을 완료한 건을 기준으로 규개위 보고 및 공표
-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비용감축 성과를 규제혁신평가에 반영

제 2 절 규제비용·편익 분석 개요

1. 비용과 편익의 분류

□ 비용과 편익

○ 비용

- 직접비용이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이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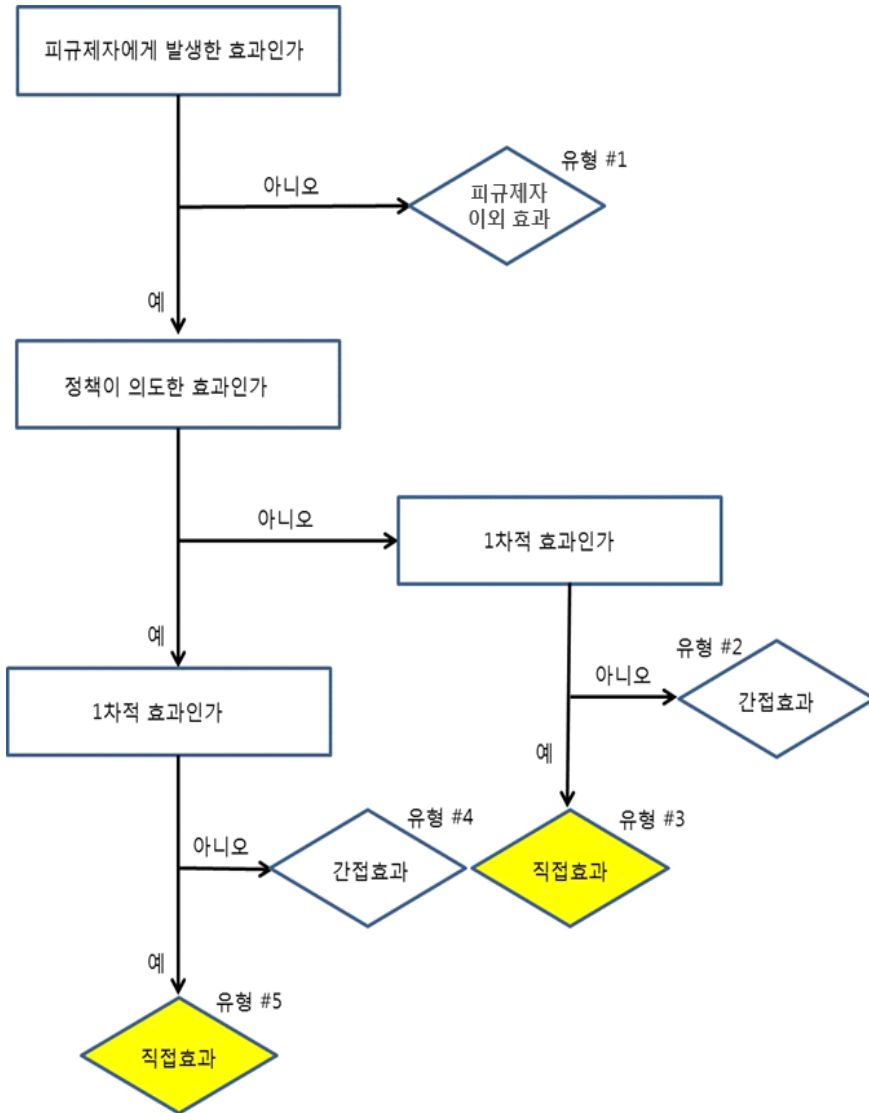
○ 편익

- 직접편익이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하며, 간접편익이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

□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류 시 ① 피규제자에게 발생한 효과인가 ⇒ ② 해당 효과가 1차적 효과인가를 검토하여 분류
-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게 부과되는 의무인지 혹은 피규제자에게 귀속되는 효과인지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
- 1차적 효과란, 규제가 직접적으로 피규제 집단에게 요구하는 행태변화 (behavioral change)의 결과(output)를 의미하는 반면,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궁극적인” 성과(outcome) 혹은 시장 등 다양한 외부 경로 및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효과는 2차적인 효과로 분류

〔그림 1-1〕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류도 및 유형 구분



자료: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2023, p.30)

〈표 1-3〉 비용과 편익의 직·간접 범위 개요

구분	범 위
직접 비용	• (행정부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 (노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 (교육훈련) 교육 훈련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 (외부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 • (설비)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 • (원재료)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 • (운영)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 (자연비용)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의 감소 • (기타)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 비용	• (수요 감소) 피규제 기업이 생산·공급하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매출감소)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 발생시 상품단가를 인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감소 • (기회비용) 규제로 인해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급 및 영업방식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이윤 등
직접 편익	• (비용절감) 피규제자가 지불했던 비용 혹은 부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 • (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 • (기타 영업이익) 변경된 규제의 시행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영업이익, 기업의 이윤 등
간접 편익	• (수요증가) 피규제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품질 향상 등으로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 (매출증가) 규제로 인해 특정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대체원료의 매출증가 • 그 밖의 환경오염 개선, 국민안전, 삶의 질 등 사회 전체적 편익

자료: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2023, p.29)

2.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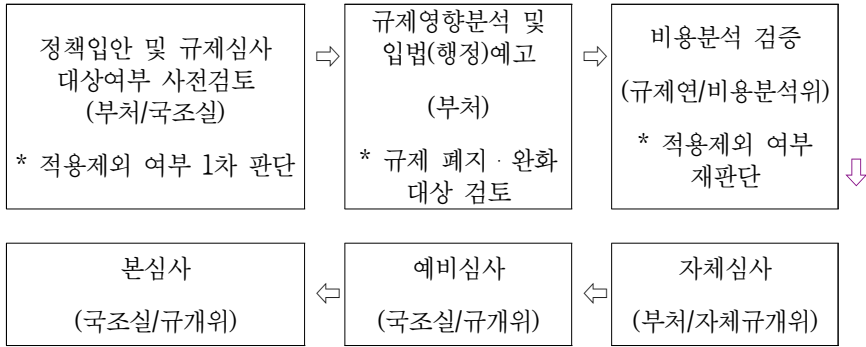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비용감축제의 적용 대상
 - － 방통위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개정 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 따라 규제비용 분석 실시 여부를 판단
 - － 2023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규제 변동 자체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사전규제 영향 심사 대상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
- 정례적으로 고시가 개정되어 사업자의 납부액 변동 요인을 제공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납금 납부 요율 변동 같은 요인이 2023년에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
 - － 이에 따라 2023년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시가 개정된 것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2 일부가 개정된 것 두 건만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비용분석 대상이 되었음

□ 방통위 규제비용 분석의 일반적 절차

-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상 규제심사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는 부처와 국조실이 사전검토를 진행해서 적용 제외 여부를 1차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 － 신설 및 강화규제의 경우 부처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담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첨부해서 입법예고를 진행
-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 내용은 규제연구센터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침
 - － 1차 검증 후 필요시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게 됨

[그림 1-2] 규제비용감축제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의 일반적인 절차



자료: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2023, p.19)

- 대체로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각 부처에서 규제개선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통위도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게 됨
 - － 현 방통위 조직도 상의 기획조정관 산하 행정법무담당관 업무 현황을 보면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이 포함되어 있음
 - － 이 부서가 주관하여 규제개선 사전검토를 진행 후 방통위가 구성해서 운영 중인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판별
 - － 이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분석 결과 공식적인 비용감축제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방통위 차원에서 확정 짓게 되는 것으로 보임
- KISDI는 방통위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규제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에 따라 분석해서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방통위에 제출

제 2 장 방송통신 분야 2023년 규제비용분석

제 1 절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1. 규제 개요

- 등기우편을 대신해 각종 고지서나 통지사항을 모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고지’는 「정보통신융합법」(ICT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률) 제 37조에 따른 임시 허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 있음
- － 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바일 고지 등을 원하는 이용기관(국세청 등 주민번호 보유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값(주민번호로 환원 불가)
(주민번호) 981214-1234567 → 비가역적 암호화 → (연계정보) xa32djtoe#%edik..
- 동법 동조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4년*(2+2년)이며, 관계기관(방통위)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함
- * 최초 허가받은 사업자(KT,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은’ 19.2.18.~’ 23.2.17.(4년)
- － 이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모바일전자고지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표 2-1〉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⑥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 23.1월 마련하여 규제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법제처로부터 내용상 흠결이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고시 주요 내용

- (현행) 본인확인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면 CI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정) 모바일전자고지 등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통위 승인을 받은 경우,
 - －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도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여 제3자(이용기관)에 제공 가능하도록 하고, 고시에 승인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승인취소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

*연계정보처리서비스(방통위가 고시, 별표6) : 모바일 전자고지(現 ICT 규제샌드박스, ' 19.2월 최초 임시허가), 금융 마이데이터(現 금융 규제샌드박스, ' 21.5월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표 2-2〉 방통위 승인 관련 주요 내용

-
- √ 승인 대상 : 방통위가 고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자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 시 방통위 승인 필요
 - √ 승인 신청자 : 연계정보처리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등) 사업자, 본인확인기관이 함께 신청
 - √ 신청 서류 : 별지 제7호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심사 항목 : 별표 7에 따른 심사항목으로 심사
 - √ 심사위원회 : 3인 이상(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과 동일 자격 보유자)
 - √ 승인 취소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별표7 심사항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법제처 지적 사항

- 본 고시 개정안은 ‘방통위 승인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연계정보(CI)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거짓으로 승인받을 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러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본인확인기관의 CI 제공 업무의 본질적이고 필수적 사항이고,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

- 현행 정보통신망법령에는 위 승인 또는 승인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고시는 법령위반 또는 위임범위 이탈의 문제가 있음

다. 고시 수정 방안

-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에 방통위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승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지적을 감안
 - 기존 개정안에서 방통위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승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23.1.3) 개정 전까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해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I 일괄변환이 既 허용된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도 CI 제3자 제공을 허용하도록 함
- *CI 정의, CI 일괄변환 처리 근거 및 CI 안전조치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현행	수정안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현 행	수 정 안
	1.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2. 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연계정보처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관련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 제37조(임시허가) ⑤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⑥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 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등에 관한 업무
 - － ②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주요 분석 내용

- 규제심사 대상 여부
 - － 현행 규정상 폐지·완화 규제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 조문 내용 변경에 따른 제목 변경이므로, 폐지·완화 규제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심사 대상이 아님

- 개정(안)은 결국 현재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확인기관은 자신이 생산한 연계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변경해서, 그 제공범위를 넓혀 ICT·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I 일괄변환이 허용된 바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제3자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
 - － 따라서 1차 개정안의 경우 애초부터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에 해당했으며, 2차 개정안은 법제화 방식의 변경일 뿐 실질적 변경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규제비용의 변경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요청에 따라 재검토 기준 시점을 변경한 것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편익 발생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

〈표 2-3〉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종류 등

구 분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이용기관 (고시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유한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따른 고지사항을 전자문서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 고지하고자 하는 행정·공공·민간 기관
2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동법 제33조의2에 의한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금융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제2절 서비스중단 고지의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 규제 개요

- ' 22.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에 따른 카카오서비스 중단 (완전 복구까지 5일여 소요) 등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른 정부 등의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안정화 관련 법 개정>(의원 발의 ' 22.12.)
 - <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 시정요구계획> 발표(경찰, 방통위, 과기부 ' 23.1.)
 -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발표(과기부 ' 23.3.)
- 이처럼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고지의무는 유료서비스만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방식이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한정되어,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에 맞지 않음
- (고지대상 확대)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임

2. 규제 개선 사항

- 그간 4시간 미만의 서비스중단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면제해왔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기간통신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기존에는 유료서비스만을 대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무료 서비스의 경우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도록 규정을 강화

현 행	개선방안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제공 중단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고지 ※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중단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고지	2시간 이상 유·무료서비스 중단시 고지의무 발생. 단, 손해배상 고지는 현행 유료서비스에 한해서 부과하던 규정을 유지

※ 적용 범위를 일정 규모(매출액 100억원·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규정 유지

○ (고지방식)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SNS 추가

현 행	개선방안
문자,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현행 + SNS 등 전자고지 추가

〈표 2—4〉 신규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12(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7조의12----- ----- ----- ----- ----- -----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1. ~ 3. (현행과 같음)
① 1. ~ 3.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 ----- ----- -----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 ----- ----- ----- ----- -----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현행	개정안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생략)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신설> 3.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문자메시지 이용 3. 그밖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 방법 이용 4. (현행과 같음)

3.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자 범위

-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되,
- － 다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피규제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
 -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 고지방식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 방식을 확대

- 기존의 전자우편 이용, 문자메시지 이용에 더해, “그 밖의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 방법” 이용을 포함
- 이외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도 인정

□ 피규제자 규모 - 기간통신사업자 +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라 직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규제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됨
- 본 개정안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로 피규제자의 범위를 제한
 -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자
- ' 22.10월 기준 부가통신사업자 15,021개사 중에서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31개사이며, 이중 부가통신역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면 25개사 정도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
 - 현행 규정상 정보통신업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
 - 아래 <표>를 참고해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이번 개정안의 피규제자로 포섭된 사업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대목임
 -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수단에 포함된 문자, 전자우편, 홈페이지(앱 포함)와 새로 추가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실질적인 비용부담 추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표 2—5〉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규모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현황

	사업자	평균이용자수	매출액
1	Google LLC	54,567,087	국내매출 확인불가
2	삼성전자(주)	39,884,047	3,022,314
3	네이버(주)	33,061,703	82,201
4	(주)카카오	31,787,563	71,071
5	SK텔레콤(주)	8,409,143	173,050
6	티맵모빌리티	8,164,404	570
7	쿠팡(주)	7,748,723	265,917
8	Meta Platform Inc.	4,704,786	국내매출 확인불가
9	(주)당근마켓	3,564,748	499
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3,081,481	13,247
11	(주)카카오모빌리티	2,474,906	7,915
12	주식회사 지마켓	2,364,039	13,185
13	(주)국민은행	2,190,384	477,130
14	농협은행(주)	2,186,463	178,372
15	11번가(주)	2,120,480	7,890
16	SK 커뮤니케이션즈(주)	2,033,043	305
17	(주)안랩	2,015,939	2,280
18	Alibaba	1,956,640	국내매출 확인불가
19	줌인터넷(주)	1,934,502	166
20	(주)비바리퍼블리카	1,874,516	11,888
21	두나무(주)	1,457,352	12,193
22	넷지헬스케어(주)	1,351,240	790
23	(주)우리은행	1,325,413	372,358
24	(주)신한은행	1,293,830	355,100
25	(주)카카오뱅크	1,241,733	16,058
26	SK플래닛(주)	1,211,935	2,779
27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유)	1,170,976	7,733
28	(주)곰앤컴퍼니	1,120,522	49
29	(주)우아한형제들	1,102,651	29,516
30	롯데컬처웍스(주)	1,068,193	4,582
31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1,020,418	12,925

자료: KISDI 내부 자료(2023년 12월 기준)

□ 고지대상 의무 사안의 규모

- ‘16년~’ 21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 당 연평균 역무 중단 건수는 1.05이며 2시간 이상 중단 비중은 30% 수준, 4시간 이상 중단 비중은 12% 수준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가통신서비스인 두 사업자에 한정할 때 추가로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 서비스 중단 사례는 $1.05 \times (0.30-0.12) = 0.189$, 즉 연간 0.19건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직접 규제비용 증분

- 본 개정안에서는 피규제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사업자는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시 고지의무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등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라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고지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
- 다만,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고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을 택할 것이므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문자 발송보다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나 SNS 고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
- 이 경우 사실상 고지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일 것
- 결국 이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 사업자의 수) $\times$ (연평균 서비스 중단 횟수 중 고지 대상 확대에 따라 늘어난 횟수) $\times$ (1회 고지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음
- 문제는 이 중 1회 고지에 발생하는 비용이 합리적인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즉, 대상 사업자의 수가 확대되어 25위 이내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연평균 서

비스 중단 횟수가 네이버나 카카오의 고지 대상에 속하는 서비스 중단 횟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지에 발생하는 비용이 0이라면, 해당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

□ 규제 편익 분석

-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혼란이 해소되고, 서비스 중단 사실 미고지로 발생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구체적인 편익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제 3장 기존 규제비용 분석 종합

제 1 절 2018년 규제비용 분석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 주요 내용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이용자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신고, 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 수행
 - － 대리인은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서면으로 지정, 미지정시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대리인의 의무 위반 시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 등 제재 부과
 - －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는 이러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
 - *글로벌 매출액 3조 원 이상 또는 글로벌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편익 및 직접비용은 없음
 - － 국내대리인 지정 자체는 유의미한 비용 발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내대리인 관련 유의미한 비용
 - － 하지만 민원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의 영업행위, 해당 해외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사업의지 등과 연계된 이차적 효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

- 국내대리인 지정 면제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대리인 지정 비용 감소라는 간접편익이 발생
 - －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비용의 규모는 사업자의 국내 시장 영업 행위 수준이나 민원발생 수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량적으로 그 규모를 기늠하기는 어려움
- 이들 면제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민원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
 - － 민원처리 어려움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는 간접비용에 해당
 - － 이상의 간접비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공공아이핀 관련

☐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 결정함에 따라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의 성격을 지니며, 본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아이핀 이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이상의 간접비용과 간접편익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이상의 분석 내용은 변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관련

☐ 주요 내용

-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을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 추진
- 기존 인터넷사이트, 전화우편, 전화, 우편 등에서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편익 및 직접비용은 없음
- 본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동의획득 방법 추가에 따른 피규제자의 잠재적 비용 감소로 제한되므로, 본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은 없음
- 단기적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 여부에 따라 직접편익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규모나 가능성이 확실치 않음
-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의획득방법 변경에 따른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편익은 단기적으로는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동의획득방법 확대에 따라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이 사용될 경우, 관련 사업자 간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일정 수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4.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주요 내용

- 기존 협찬고지 규칙 중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반사업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 본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와 종료타이틀 고지 시 중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존 고지내용 외에 단순한 기업명 등을 영문 표기하는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고지를 허용하고, 현행 모니터링 기준을 고려하여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개정
 - 유료방송 대비 규제가 강한 중앙 및 지역지상파에 대해 매 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2회, 지역지상파는 각 3회로 고지 횟수 1회씩 확대

□ 비용분석 결과

- 해당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나 직접편익은 발생하지 않음
 - 협찬매출액 증가는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의 대응전략, 광고주의 반응, 소비자 반응 등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될 것이므로 간접편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간접편익은 방송사의 협찬매출액 증가에 따른 편익(영업이익), 협찬방식개선에 따른 광고효과 증가로 발생하는 협찬주 매출 증가, 시청자의 광고정보 습득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 등

- 방송사의 협찬매출액 증가에 따른 간접편익의 규모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의 증가액으로 협찬매출액 증가액과 영업이익률의 곱으로 산출
- 지난 5년간 방송사업자 협찬매출액은 연평균 10.25% 증가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간접편익 또한 연간 10.25%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가정을 통해 3년간 발생하는 간접편익의 총 현재가치는 29백만 원 (2,908만 원)(할인을 5.5% 적용)

5.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

□ 주요 내용

- 본 규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판매에 있어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
- 적용대상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유료 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영업 수익의 20%를 원칙으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산정함

□ 비용분석 결과

- 해당 개정안에 따라 직접편익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상한선 이상으로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의 감소액은 본 규제로 인한 직접편익이라고 볼 수 있음
- 직접편익은 2018년 1,250억 원, 2019년 1,292억 원, 2020년 1,361억 원 발생하고, 이들 금액의 현재가치는 총액 3,697억 원, 연간균등순편익은 465억 원

- 요금할인 및 서비스품질 개선 경쟁을 통해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 될 경우, 사업자 전체 이윤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이윤 감소액은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 － 또 다른 간접비용은 가격차별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매출 감소액
- － 하지만 방송통신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내용

- 방통위 소관 방발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승인 대상사업자인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며 본 개정안은 방발기금 분담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상향에 따른 종편·보도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추가 징수액으로 직접비용 1,176백만 원 발생
-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아래 산정식에 따라 결정

$$\text{분담금} = [\text{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①)} \times \text{최종징수율(②)}] - \text{경감액(③)}$$

- － 개정안에 따라 종편·보도PP의 최종징수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 추가 징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 후생 증가는 본 개정안에 따른 간접편익

제2절 2019년 규제비용 분석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 주요 내용

-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 － 의무 대상 범위는 ‘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하고, 최저보험 가입금액 등은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별 차등 설정
- － 피규제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저보험가입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이 의무화되어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짐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 20,029백만원, 직접편익은 13,960백만원 발생하여, 연간균등순비용은 6,069백만원 발생
- － 직접비용: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에 따른 비용
- － 직접편익: 개인정보 누출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이에 대한 처리를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감소
- 이용자 신뢰 제고를 통한 사업자 이윤 증가,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개인정보보호 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사 이윤 증가 등의 간접편익 발생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 주요 내용

- 별도의 징수율 결정 체계였던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산정체계에 편입하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 － 고시 개정안에 따라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는 징수율 및 분담금 인하 효과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인하로 이는 직접편익에 해당되며, 연간균등 2,694백만원 발생
- － 본 개정안의 피규제자는 지상파, 종편, 보도PP로 전체 사업자 수는 53개
- － 3년간 발생하는 직접편익의 현재가치 총액은 7,668백만원, 연간균등편익은 2,694백만원

3. 공익광고 고시

□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 －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 편성 시 가중치 부여
- －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 － 일부 사업자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상향 조정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효과는 없거나 미미함
- － 공익광고 편성량 변화에 따라 사회 공익성 효과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간접효과에 해당

제3절 2020년 규제비용 분석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서비스 유형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웹하드사업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자(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유형 등 고려)로 한정
 -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성능평가 규정하고, 기술적 조치 기록보관 기간은 3년으로 규정
- 본 개정안이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4가지
 - － 불법촬영물등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필요시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 － 정보의 특징 등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처벌 관련 경고문 명시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피규제자에게 기술적·관리

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사업자는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

- 유의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금칙어 기능 조치와 필터링 기능 조치
 - 금칙어 기능 적용을 위한 기능적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자당 응용SW개발자 1/2 M/M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당 개발비용은 3,197,547원 발생
 - 필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기능적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자 당 응용SW개발자 1 M/M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당 개발비용은 6,395,094원 발생
 - 개발 비용 이외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인건비 발생하여 사업자당 IT시스템 운용자 5일(한달 기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당 16,716,300 원의 운영관리 비용 발생
-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규제비용은 10년간 총 17,963 백만원(현재 가치)이며, 연간균등순비용은 2,270백만원 발생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

-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시행 법률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은 피규제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항목은

- 자료 제출 요청시 발생하는 자료제출 비용이 해당
-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며, 산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라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
 -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정부기관 등이 정부광고법에 따라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방송프로그램 협찬, 공익행사 협찬, 공익성 캠페인 협찬, 방송프로그램 예고 또는 공익행사 예고 협찬으로 협찬의 종류 규정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은 없다고 판단됨
- 본 개정안에 의한 추가적인 의무조항이 발생하여 규제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협찬매출은 방송사의 주요 매출 중 하나로 협찬고지는 정부요청에 의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우 일상적인 방송사의 영업행위로 추가적인 협찬고지에 따른 물리적인 비용은 사실상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 요청에 의한 협찬고지가 야기하는 기회비용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접 비용·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IPTV3사는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SO, 위성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해오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은 없음
- 또한,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등

☐ 주요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규정 신설
-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 방송·통신·IPTV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불공정 및 이용자 이익 침해 등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 근거 명확화

○ 동의를결제도 도입

- －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를결제를 도입함

○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사업규모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차등부과, 사실 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심사 적용을 고려할 만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직접비용 또는 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본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관련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됨으로써, 소비자 효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개정안에 따라 피규제자 이외 집단(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간접편익이라고 볼 수 있음
- － 동의를결제 활용에 따라 법적 분쟁 비용·시간이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본 개정조항에 따른 직접편익이 아닌 간접편익에 해당
-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주요 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신설
 -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에 따른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이해관계자 정취에 따른 물리적 비용은 정부의 행정비용에 해당하므로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규제자의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 본 개정조항을 통해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경우 방송광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영향은 본 개정조항에 따른 간접편익에 해당됨

7.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증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직권 조정 제도 신설
 - － 방송법 제91조의8에 따른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직

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추진

- 직권 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정부의 자의적인 시장질서 개입 최소화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직접편익은 없다고 판단됨
- 본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분쟁비용 감소 및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따른 사업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 편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접편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

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 주요 내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별 결합판매 평균비율(별표1),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등을 개정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별표1] 재고시,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 [별표2] 재고시

☐ 비용분석 결과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사업자별 결합판매지원규모를 산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4절 2021년 규제비용 분석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기준 설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만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
- － 유료방송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중간광고 횟수·시간 등 허용기준을 규정
- *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피규제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를 판매함에 따른 방송광고매출 증가분이며, 이는 직접편익보다는 간접편익에 해당
- 광고판매를 위한 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지상파의 광고판매는 광고대행사인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광고 판매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중간광고 판매를 위해 프로그램을 나누고, 자막을 입히는 등의 작업이 추가되었으나, 이들 작업 또한 일상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보임
- － 중간광고 판매를 위해 추가되는 지상파사업자의 비용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관련)

□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
 -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 불법촬영물등 의심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한차례 연장 가능)
 - －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등을 통한 검색제한 조치(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 연관검색어 제한)를 하여야 함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고시안에 따른 직접편익 및 직접비용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 －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서 해당 개정안에 따른 비용편익은 연간균등순비용 2,270백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음
 - － 본 개정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고시안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 또는 직접편익을 별도 산출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비용분석과 중복산출이 됨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주요 내용

-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등이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의무 부과
 -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만 접수채널 확보, 내부 불만 처리지침 마련 등 의무
 -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
 - 환불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
 -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함
 -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 비용분석 결과

- 본 규제안의 내용은 노출 기준 등 정보 공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금지행위 규정 등 대체로 피규제자의 물리적인 직접비용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행태 변화를 통한 매출·비용 변화 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규제비용관리제 분류 기준에서 간접효과에 해당됨
 - － 이용자 불만 접수 채널 운용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중개 기능 특성상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정보 일부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규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직접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한 매출·이윤 증대, 전환비용 감소 등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 따른 분류상 간접효과(피규제자 이외 사업자에 대한 간접편익)에 해당
- 본 규제안이 명시하고 있는 이용정보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직접비용에 해당
 - －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중개 기능 역할을 고려할 때 본 규제안에 따라 추가적인 직접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적인 서버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다만, 이용정보의 범위, 이용방법 등에 따라 규제순응을 위한 직접비용이 발생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움

- 이용정보의 범위 및 접근 거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시행령 또는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출기준 공개의 경우 홈페이지나 약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므로 공개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용자가 노출기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수준의 직접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용자가 개인화된 노출 기준의 적용을 거부할 경우, 개인화된 정보에 기반한 비즈니스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본 규제안에 따른 간접효과에 해당됨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9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 주요 내용

- 본 규제안은 이용자가 앱 마켓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에 명시할 사항 및 이용약관의 변경 방법 규정, 민원전달 회신, 앱 마켓의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이용약관에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용약관 중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사실 및 변경되는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마켓 접속화면에 게시하고 고지토록 규정
-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달받으면
이용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

- 앱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에 관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환불정책 등 중요한 사항 고지, ▲미성년자 결제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규정, ▲이용계약의 철회, 해지시 이용자 편의 고려, ▲이용계약의 철회, 해지를 제한을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앱마켓사업자에게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용분석 결과

- 피규제자인 앱마켓 사업자는 본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검토에 따른 비용 및 이용약관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변경은 따른 비용은 법리 검토와 약관 변경을 위한 행정 업무에 따른 인건비
- 사업자당 직접비용은 3.8 백만원이며, 전체 직접비용은 19.2 백만원 (3,841,573원, 5개 사업자), 연간균등순비용은 2.3 백만원 (분석기간 10년, 할인율 4.5% 기준)
- 본 분석에서 새로운 피규제자 진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직접비용은 규제 시행년도 1년차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주요 내용

-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 지연 또는 모바

일콘텐츠 등 삭제로 통해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금지행위로 규정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
-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는 앱 마켓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규정
- 삭제하는 행위는 제9호와 동일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제한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규정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에 따른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앱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시행령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한 심사 지연, 부당한 삭제 금지 또한 이를 위해 앱마켓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시행령안에 따라 이러한 자체 결제방식 강제가 금지됨으로써,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결제방식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경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따라 피규제자인 앱마켓사업자의 수수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러한 수수료 매출 감소는 본 시행령안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간접효과로 보는 것이 적절
 - 중장기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통한 사업자 또는 소비자 후생 증가는 규제비용

관리제에서의 직접비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간접효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주요 내용

- 본 규제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 이용자의 이익 저해 등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및 재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위한 매출액 산정, 사전 통지 등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51조의2가 위임한 사항들을 본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실제적·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 비용분석 결과

- 본 시행령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재제출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제출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본 시행령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접비용
- － 하지만, 해당 이행강제금은 향후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피규제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량분석은 적절하지 않음
- － 또한, 원론적으로 볼 때, 본 규제안과 같이 피규제자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용으로 추정하고 이를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서는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

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를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따라 사회적 편익, 특히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소비자 후생 증가는 본 개정안에 따른 간접편익에 해당됨

제5절 2022년 규제비용 분석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 분담금 징수율을 규정
- －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승인 대상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
- －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

☐ 비용분석 결과

- 고시 개정의 경우 분담금 징수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비용이 발생
-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방송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산정하므로, 지난 방송광고매출액의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방송광고매출액을 추정하여 규제비용 분석을 실시
- － 최종징수율을 방송광고매출액에 곱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개정 전 기준에 따른 징수액 산출액과 비교하여

-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징수액의 차액의 합산액을 총 규제비용으로 간주
- 분담금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연간균등 3,606백만원 발생, 3년간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은 10,359백만원, 연간균등비용은 3,606백만원
 -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효과
 - 본 개정안은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징수율을 산정하고 있어,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 및 분담금이 부과
 - 중소기업 차등화 실적은 중소기업 3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의 차액으로 추정
 - 규제 차등화 실적 규모는 연간균등 약 133백만원, 3년간 발생하는 차등화 실적의 현재가치는 약 380백만원, 연간균등가치는 약 127백만원

2.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주요 내용

- 장애인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물의 의무 편성 비율을 확대
 - 장애인의 기본적 권익인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방송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함
 -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한하여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을 5%에서 7%로 확대
 -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 제외)·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 재방비율을 30%에서 25%이하로 축소

□ 비용분석 결과

- 본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증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로 인한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이며 이는 직접비용에 해당
 -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 실적이 개정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과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방송물의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비용 산출에 적용
 - － 정부는 사·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 이를 해당 방송사업자에 발생하는 비용 산출에 반영
- －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 17백만 원 발생, 이는 한국수어방송 추가 제작비용(2개사) 15,512,491원과 화면해설방송 추가제작비용(1개사) 1,878,520원의 합
- － 3년간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은 43백만원, 연간균등비용은 14백만원

제6절 규제 성과 분석

- 이 절에서는 앞에서 요약한 지난 5년간 분석 대상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그간 분석 대상이 되었던 총 25건의 규제 중 직접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2018)〉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2019)〉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202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9: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보호(202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2022)〉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2022)〉
- 이들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규제비용의 총합은 131억3천7백여만 원이었음
 - － 이 중 가장 많은 직접 규제비용이 발생한 규제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개정안〉이었으며, 발생한 비용은 약 60억6천9백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음
- 지난 5년간 분석 대상이 되었던 총 25건의 규제 중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한 규제개선은 딱 세 건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음
 -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2018)〉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201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2019)〉

- 이들 규제로 인해 발생한 기대 편익의 합은 631억5천4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 － 이 중 가장 많은 직접적 규제편익이 발생한 규제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2018)> 개정안이었으며, 발생한 편익은 약 465억에 달하는 직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표 3-1〉 2018~2022년도 규제 비용 및 편익 성과

연도	규제	직접 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직접 편익 (연간균등순편익)
2018 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없음	없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공공아이핀 관련	없음	없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관련	없음	없음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없음	없음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	없음	46,500백만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176백만 원	없음
2019 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6,069백만 원	13,960백만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없음	2,694백만 원
	공익광고 고시	없음	없음
2020 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270백만 원	없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없음	없음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없음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없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등	없음	없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없음	없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없음	없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없음	없음

연도	규제	직접 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직접 편익 (연간균등순편익)
2021 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기준 설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없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관련	없음	없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없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9: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2.3백만 원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없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없음	없음
2022 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3,606백만 원	없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14백만 원	없음

제 4 장 결 론

- 본 보고서 제1장에서는 규제비용분석의 필요성을 낳은 제도적 기반인 규제비용 감축제에 대한 주요 개념 및 분석 절차 등을 요약하였음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규제 비용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감하는 제도를 규제비용감축제라고 함
 -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연간균등순비용’이 우리나라 규제비용감축제의 실질 관리 대상임

-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제·개정 규제안에 대한 비용 분석을 검토하며, 검토대상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12조의2)
 -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2 개정(서비스 중단시 고지의무 대상 및 방식 변경 건)

- 먼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의 경우 규제 완화에 해당되어 사업자 직접 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규제비용감축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 규제비용감축제는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개인 등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 － 다만 규제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고시 개정으로 인해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편익의 발생 규모는 어떤 가정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규제비용의 일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변화에 따른 것임
 - － 기존에는 고지 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중단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지 대상이 된 점
 - － 고지 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고지 대상 의무사업자로 추가 포섭된 점
 - － 고지방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SNS를 통한 고지가 추가된 점
 - － 먼저 서비스 중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직접 비용 추가는 해당 시간 범위 내의 평균 장애 발생 빈도를 정해야 직접 비용의 증분에 대한 적합한 추정이 가능
 - － 부가통신사업자로 고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확대된 것은 상당한 비용 추가 소지를 내포하지만, 장애의 확률이 높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상쇄 가능한 수준
 - － 또한 SNS를 방식으로 추가한 것은 유료서비스인 문자서비스나 우편에 비해 비용 절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제3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신방송 규제비용 분석 보고서를 종합함으로써, 그간의 규제비용분석의 성과와 한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았음
 - － 지난 5년간 분석 대상이 되었던 총 25건의 규제 중 직접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한 사례는 총 6건이며, 발생한 직접비용의 총합은 131억3천7백여만 원이었음
 - － 이 중 가장 많은 직접 규제비용이 발생한 규제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개정안이었으며, 발생한 비용은 약 60억6천9백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음
 - － 지난 5년간 분석 대상이 되었던 총 25건의 규제 중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한 규제개선은 딱 세 건이었으며, 기대 편익의 합은 631억5천4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 이 중 가장 많은 직접 규제편익이 발생한 제도 개선은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안으로, 약 465억에 달하는 직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지난 5년간 규제비용 분석 대상 과제 25건의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 약 5백억 원 이상의 순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ps://www.crms.go.kr/>.
- 국무조정실(2019),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7),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 2023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0),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앱마켓 생태계의 이용자보호 방안 도출』.
- _____, 『2019년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보고서』.
- _____, 『2020년 인터넷플랫폼시장 주요 이슈 도출 및 분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0),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대외비).

● 저 자 소 개 ●

곽 동 균

- 서울대 신문학과 학사/석사
- Indiana University 언론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 민 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신 지 형

- Univ. of Florida 통계학 학사/석사/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호 정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02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3)

2023년 12월 일 인쇄

2023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

